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 227 회 임시회
[2019.1.31.(목)10:00]

검 토 보 고 서



복지도시위원회

목 차

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9-4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제출일자 : 2019년 1월 18일
- 회부일자 : 2019년 1월 21일

3. 제안이유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29개조로 구성)

가. 협의회 주요사업(안 제3조)

- 1)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 2)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사업
- 3)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회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4) 건강도시 홍보사업 등

나. 협의회 구성 및 임원(안 제4조~제13조, 안 제18조~제23조)

- 1) 구 성: 정회원 93개 자치단체, 준회원 11개 기관 [붙임 1]
- 2) 임 원: 의장도시 1, 부의장도시 1, 감사도시 2, 운영위원회 11
- 3) 임원임기: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다. 정기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안 제17조)
- 라.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안 제18조 ~ 안 제21조)
- 마.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 및 지출
(안 제24조 ~ 안 제28조)
- 바.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 나. 예산사항 : 자치단체부담금(연회비: 2,000천원)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6. 검토의견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마포구청장이 2019.1.18일 의회에 제출하여 2019.1.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본 협의회 설립 취지는 지방정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건강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규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장 '총칙'은 협의회 명칭, 목적, 사업을
 - 제2장 '회원'은 구성 및 자격, 가입절차,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포상, 자격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 '임원'에서는 의장도시 등 임원의 구성 및 임기와 임원의 선출방법 및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4장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하고, 총회의 기능과 성립 및 의결 등을 명시하고,
- 제5장은 11개 도시 이내의 정회원과 다수의 준회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6장 '기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하고,
- 제7장에는 협의회 업무처리를 위해 의장도시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및 보조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8장에는 광역 자치단체 300만원, 기초자치단체 200만원의 연회비 등 협의회의 재정과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해 규정하였음

○ 동의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거주여건 악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야기되고,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100세 건강시대에 맞는 건강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기존의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보다 상위개념인 도시 전체의 건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보다 적극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 구민의 보건의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구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강증진을 통한 진정한 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조직 절차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또한 동의안으로 제출된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건강도시(Healthy city)의 개념이 전 세계에서 처음 소개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6년이며, 이후 유럽의 몇몇 도시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약 12년 후인 1998년 과천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도 건강도시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음.

- 같은 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 2003년에는 WHO 서태평양지역의 건강도시연맹(Alliance for Healthy cities, AFHC)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건강도시는 양적인 팽창이 가능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2006년 9월에는 WHO 건강도시에 가입한 우리나라 도시들의 네트워크인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 KHCP)가 창립되었으며, 2019년 1월 현재 93개 대한민국 도시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표 1] 서울시 자치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현황

구분	가입 현황	미가입 현황	비고
자치단체	23개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	3개 (마포구, 노원구, 광진구)	연회비 200만원

※ 참고자료(붙임)

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현황 1매
2. 관계법령 1부

【붙임 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현황

■ 정회원(93개 도시)

【2019. 1. 기준】

시·도명	자치단체명	비고
서울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동작구, 중구, 영등포구, 송파구, 구로구, 서대문구, 종로구, 강동구, 용산구, 중랑구, 관악구, 동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양천구, 강북구, 서초구, 은평구	
부산 (4)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장군	
대구 (1)	수성구	
인천 (2)	연수구, 남구	
광주 (4)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대전 (1)	유성구	
울산 (1)	울산광역시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15)	화성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양평군, 시흥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고양시, 오산시, 성남시, 양주시, 안산시, 의정부시	
강원 (3)	원주시, 양구군, 속초시	
충북 (4)	제천시, 진천군, 보은군, 충주시	
충남 (8)	금산군, 서산시, 부여군,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전북 (5)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군산시, 남원시	
전남 (4)	장흥군, 완도군, 순천시, 광양시	
경북 (9)	안동시, 구미시, 고령군, 경산시, 포항시, 상주시, 울진군, 경주시, 군위군	
경남 (7)	남해군, 진주시, 창원시, 양산시, 하동군, 통영시, 거창군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 준회원(11개 기관) :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경남대학교 건강향노화센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연구팀,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의료지원센터

【붙임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절주) 044-202-286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7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시행 2017.03.30.](제정) 2017.03.30 조례 제1094호

관리책임부서 : 보건행정과
연 락 처 : 02-3153-9023

제12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1호, 2018. 10.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의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의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할 수 있다.